# 학교법인 양산학원 이사회 회의록

## (2023학년도 제05차 회의록)

| 구분 | 이사 | 감사 |
|---|---|---|
| 임원정수 | 8인 | 2인 |
| 재적임원 | 8인 | 2인 |
| 참석임원 | 6인 | 0인 |

1.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11:00~12:00 (회의개최 통보일자: 2023년 8월 23일)

2. 장소: 경북보건대학교 회의실

3. 임원출결사항

○참석임원
- 이사 (6인) 편군자, 이병희, 이춘근, 이건호, 정경옥, 김성구
- 감사 (0인)

○결석임원
- 이사 (3인) 이상하, 신석기
- 감사 (2인) 이주경, 장나윤

4. 안건

□ 제1안건: 2023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안) 심의 · 의결
□ 제2안건: 학교법인 양산학원 정관 개정(안) 심의 · 의결
□ 제3안건: 학교법인 양산학원 기본재산 편입(안) 심의 · 의결

5. 회의 내용

(편군자 이사장이 간단한 인사말을 하다.)

법인기획실장 채승용:

○재적 이사 8명 중 6명의 이사가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한 후 회순에 따라 국민의례를 진행하다.

이사장 편군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3학년도 제05차 학교법인 양산학원 이사회 회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이사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편군자 이사장이 2023학년도 제05차 학교법인 양산학원 이사회 회의 안건을 설명하다.)

○의사일정에 의견 있으신 이사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 김성구: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이춘근: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2023학년도 제05차 학교법인 양산학원 이사회 회의 의사일정에 동의를 표하다.)

| 이병희 이사 | 이춘근 이사 | 정경옥 이사 |
|---|---|---|
| 이병희 | 이춘근 | 정경옥 |

이사장 편군자: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이사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의 전원 동의로 2023학년도 제05차 학교법인 양산학원 이사회 회의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 제1안건: 2023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안) 심의 · 의결

이사장 편군자: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3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안) 심의 · 의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보건대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임용 심사가 있었습니다.

○경북보건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전임교원 임용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2023학년도 2학기 간호학과 장미경, 송정화 후보자의 신규임용을 본 이사회에 제청하였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그 동안 경북보건대학교에서 시행한 임용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신규임용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해서 신규임용 여부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채승용 법인기획실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기획실장 채승용:

○준비된 자료는 2023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후보자의 인사서류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한 심의 결과 자료입니다.

(법인기획실장이 경북보건대학교 2023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안)에 대해서 설명하다.)

이사장 편군자:

○이상으로 법인기획실장으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기획실장의 설명과 준비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이사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 이춘근:

○준비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 전임교원 신규임용 후보자의 우리대학 전임교원으로의 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 이병희:

○저 역시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신규임용이 제청된 간호학과 장미경, 송정화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에서 우리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원 임용 심의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원인사위원에서 임용에 제청된 원안대로 신규임용할 것을 발의 합니다.

이 사 이건호:

○저 역시도 이병희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사 정경옥:

○재청합니다.

| 이병희 이사 | 이춘근 이사 | 정경옥 이사 |
|---|---|---|
| 이병희 | 이춘근 | 정경옥 |

(참석 이사 전원이 2023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안)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다.)

이사장 편군자:

○이병희 이사님께서 발의 하신 2023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안)에 대해서 이건호 이사님께서 동의해 주셨으며 정경옥 이사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의 전원 동의로 아래의 사항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장미경 후보자에 대한 2023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20일까지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정년방식 전임교원 조교수 신규임용(안)
- 송정화 후보자에 대한 2023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20일까지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정년방식 전임교원 조교수 신규임용(안)

## □ 제2안건: 학교법인 양산학원 정관 개정(안) 심의 · 의결

이사장 편군자:

○다음으로 학교법인 양산학원 정관 개정(안) 심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승용 법인기획실장으로부터 학교법인 양산학원 정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이 있으신 이사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기획실장 채승용:

○준비된 자료는 학교법인 양산학원 정관 변경에 대한 사유서 및 신구 대비표입니다.

(법인기획실장이 학교법인 양산학원 정관 개정(안)에 관해서 설명하다.)

이사장 편군자:

○이상으로 법인기획실장의 학교법인 양산학원 정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기획실장의 설명과 준비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이사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 이춘근:

○법인기획실장의 설명과 준비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반영 및 교육부 시정요구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정관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사 이건호:

○저 역시도 학교법인 양산학원 정관변경에 대해서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사 이병희:

○학교법인 양산학원 정관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을 재청합니다.

(참석 이사 전원이 학교법인 양산학원 정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다.)

이사장 편군자:

○이춘근 이사님께서 발의하신 학교법인 양산학원 정관개정(안)에 대해서 이건호 이사

| 이병희 이사 | 이춘근 이사 | 정경옥 이사 |
|---|---|---|
| 이병희 | 이춘근 | 정경옥 |

님의 동의와 이병희 이사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 전원이 이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의 전원 동의로 다음과 같이 학교법인 양산학원 정관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개정 전 조문 | 개정 후 조문 | 비고 |
|---|---|---|
| 제40조(휴직의 사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고, 제7호 및 제7의2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한다.<br>1. ~10. <생략><br>11. 기타의 사유로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br>12. <신설><br>13. <종전 11호에서 이동> | 제40조(휴직의 사유)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고, 제7호 및 제7의2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한다.<br>1. ~10. <현행과 같음><br>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br>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br>13. 기타의 사유로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11호에서 이동] |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반영 |
| 제88조(사학기관 행동강령)① 제87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 5. <생략><br>② <생략> | 제88조(사학기관 행동강령)① 제87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한다)을 따로 정하며 사학기관 행동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 5.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제1항 및 제2항 반영 |

## □ 제3안건: 학교법인 양산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편입(안) 심의

이사장 편군자: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학교법인 양산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편입(안) 심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창훈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처 과장 오창훈:

○준비된 자료는 금번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에 관한 자료입니다.

(행정지원처 과장이 수익용 기본재산 편입(안) 관해서 설명하다.)

- 대상금액 : 3,192천원

-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 제1항 3호 및 4호

이사장 편군자:

○이상으로 오창훈 과장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과 준비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이사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 정경옥:

○절차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법인의 기본재산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편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희 이사 | 이춘근 이사 | 정경옥 이사 |
|---|---|---|
| 이병희 | 이춘근 | 정경옥 |

이 사 이춘근:

○ 정경옥 이사님의 발의에 동의합니다.

이 사 이건호:

○재청합니다.

이사장 편군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이사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이사 전원이 동의를 표하다.)

이사장 편군자:

○정경옥 이사님께서 발의하신 학교법인 양산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편입(안)에 대해서 이춘근 이사님의 동의와 이건호 이사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 전원이 이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의 전원 동의로 학교법인 양산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편입(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사장 편군자:

○사립학교법 제18조의 2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참석임원을 대표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할 임원을 호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이건호: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할 임원으로 이병희 이사, 이춘근 이사, 정경옥 이사를 호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건호 이사의 제안에 김성구 이사의 동의, 이춘근 이사의 재청과 참석이사 전원이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서명할 임원 호선에 동의를 표하다.)

이사장 편군자: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할 임원으로 이병희 이사, 이춘근 이사, 정경옥 이사가 호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2023학년도 제05차 학교법인 양산학원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31일

# 학교법인 양산학원 이사회

이 사 편 군 자 편군자

이 사 이 병 희 이병희

이 사 이 춘 근

이 사 이건호 (서명)

이 사 정경옥 (서명)

이 사 김성구 (서명)